

지휘서신 제11호: 장애인을 위한 합당한 편의

1. 관련근거

- 가. 美육군규정 690-12 고용의기회균등및다양성 (2019. 12. 12.)
- 나. 美재활법(Rehabilitation Act) 제501장 (1976. 9. 26. 개정)
- 다. 美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1990. 7. 26.)
- 라. 美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개정사항 (2008. 9. 25.)
- 마. 美8군사령부 지휘서신 제9호 (2023. 4. 19.) 장애인을 위한 합당한 편의

2. 목적: 장애를 가진 자를 위하여 합당한 편의(Reasonable Accomodation(RA))를 제공하는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배경: 장애인이란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특별한 편의 제공이 없이도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들도 있으나, 많은 경우의 피고용자 또는 지원자는 장애에 대한 편의의 제공이 없는 장벽을 마주한다. 편의를 필요로 하는 장애를 가진 자는 자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 결정, 직무 수행, 고용의 기회균등과 관련하여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직장 내 장벽을 인식하게 되면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업무 성과가 저해되거나 업무 평가가 진행되기 전에 편의 제공을 요청할 의무가 있다.

4. 세부 내용

가. 업무에 필수적인 기능의 수행, 보직을 위한 경쟁, 고용의 균등한 기회 또는 편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합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 어떤 개인도 자신의 장애로 인하여 진급 등의 기회를 박탈당하여서는 안 된다. 합당한 편의는 필요한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으로 제공된다.

나. 합당한 편의란 고용의 기회균등(EEO)을 보장받기 위하여 업무 내용, 고용 절차, 업무 환경에 필요한 수정 내지 변경 사항을 말한다.

5. 피고용자 및 관리감독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 요청에 관한 미8군의 처리 절차를 숙지한다.

6. 제2보병사단/한미연합사단의 관리감독자는 합당한 편의 제공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인권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반려를 결정하여야 한다.

7.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고용기회균등(EEO)부서로 신고한다.

8. 이 지휘서신에 관한 담당부서는 미8군 EEO (DSN (315)755-0320/21)로 한다. 끝.



WILLIAM D. TAYLOR
Major General, USA
Commanding

